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13
----------	-----

2024. 9. 12.  
도시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3. / 김상수 의원 등 8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12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의 총공사비 기준 상향 개정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문 대상의 총공사비 기준 상향 개정(안 제2조제1항제2호)
-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, 제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발의하는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 대상을 현행 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시가 출자한 납입자본금 2분의 1 이상 출연·출자한 기관을 포함시켜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상향시키고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,  
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.

○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조문의 정비와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술자문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#### 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#### 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